코로나19 보도와 피해구제

박종권 중재위원(서울제5중재부), **이예찬** 언론중재위원회 직원(前 서울제5중재부 조사관)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국가는 진정세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어 속단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발생 초기에는 이른바 'K-방역'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이는 방역당국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참여한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탕이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했다.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불안 조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언론은 어떠한 보도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 국익과 시민 개개인의 사생활은 어떻게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감염병 보도준칙'을 공식 발표했다. 감염병 보도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한다. 둘째,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셋째,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준칙은 이를 뼈대로 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관련 보도는 속보 경쟁과 '클릭' 유도 제목이 넘쳐났다. 자연스럽게 공포심이 조장되고,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사례가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속한 피해구제' 못지않게 바람직한 보도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다. 일반인의 경우 감염 사실의 공개만으로도 차별과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노출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감염병 보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정과 반론, 손해배상금 결정 등 조정이 성립되면서 자연스럽게 '선례'가 '기준'으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전담 중재부(서울제5중재부)를 지정했다. 2021년 5월말 기준으로 109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86.1%라는 높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조정사건 피해구제율[1]에 비춰볼 때 매우 괄목할만한 수치다.

처리 결과를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전 조정으로 피해가 구제돼 취하된 사안이 58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6건(23.9%), 직권조정결정이 받아들여진 사안이 3건(2.8%)이다. 하지만 중재부의 노력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13건(11.9%)이다. 보도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 기각된 사례도 8건(7.3%) 있었다. 이 역시 처음 겪는 세계적 감염병 보도의 준거 틀을 세워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방역과 사생활 보호

언론보도에 대한 독자와 시청자의 주목도는 공포심에 비례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은 매일 일기예보보다 더 꼼꼼하게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챙긴다. 추세가 하향이면 안도하고, 상향이면 걱정한다. 과연 이 '코로나 블루'가 언제쯤 걷힐 지 답답한 가슴을 부여안으면서 말이다. 자연히 자신은 물론 타인의 방역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노출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 방송의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해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례 1〉

A언론사는 2021년 2월 9일 "부천 집단감염 발생…최소 53명 확진" 제목의 보도에서 자료화면으로 '종교시설 확진자 학원 강사로 일하며 전파'라는 자막과 함께 번호판이 뚜렷한 차량 두 대의 모습을 노출했다. 그 중 한 차량 소유자는 자신이 종교시설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020년 67.8%, 2019년 69.2%, 2018년 71.4%

방송사 측은 차주와 코로나19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2020년 3월 7일 B언론사는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 사진 기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시민의 초상과 차량을 노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5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됐다.

신청인은 마스크를 낀 상태로 얼굴 옆모습만 드러나 식별이 어려웠다. 그러나 사진을 확대하면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아파트 동호수와 휴대전화 번호가 식별되는 점이 인정됐다. 신청인은 이 기사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았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사진을 확대해야 간신히 숫자를 알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례 2〉

C언론사는 2020년 11월 26일 "S방송사 자회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직책'을 명기했다. 특기할 점은 신청인의 항의에 언론사가 즉각 기사를 수정하면서 '사과드립니다'라는 유감표명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을 수용하는 경우는 많으나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쓰는 예는 드물다. 피신청인은 조정 대상 기사의 하단에 "(기사) 작성 과정에서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책을 표기함으로써 피해를 줬습니다. 개인 신상이 특정되는 정보를 표기해 실제 해당 직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확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처 개인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직원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례 3〉

D언론사는 2020년 5월 2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찾은 어린이들" 및 "코로나19 검사실 향하는 어린이들" 제목의 사진기사에서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어린이 두 명과 그 모친의 뒷모습을 노출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측은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콧물이 나 일단 다른 아이들과 격리시켰고, 완전히 나은 후에 등원시키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이나 다른 학부모의 오해나 걱정을 불식시키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면서 사진이 보도되자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들로부터 확인과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아이들이 특정 유치원의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사진 설명에 '서울 ○○구의 보건소'라고 지역이 소개돼 해당 유치원과 관련 학부모들은 곧바로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신청인 측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실, 건강과 질병에 관한 민감한 정보 등이 노출돼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뒷모습만 촬영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신청인 요청에 따라 사진을 즉시 삭제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며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았다. 중재부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했으며, 동의 없이 다른 신문사에 정보를 제공했고, 기사를 본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여러 차례 항의전화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더 이상 유치원에 다닐 수 없어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아야 했던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금 400만원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이를 양측이 받아들여 최종 확정됐다.

이 결정은 비록 뒷모습일지라도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보도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단체 및 상호 노출 피해

회사나 단체, 특히 상호가 노출되면 직접적인 피해가 따른다.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적 눈총을 받아 명예가 실추되고, 음식점의 경우 방문기피 대상이 된다. 이때는 비록 사후에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뤄진다고 해도 최초 보도의 각인효과가 매우 커 제대로 피해를 구제받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보도기관은 사실 확인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례 1〉

E언론사는 2020년 3월 31일 “서울시, 내일 예배 교회 현장점검…경찰도 동행”이란 제목으로 서울 시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특정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교회명과 건물 외관을 공개했다. 언론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목사가 재직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해당 교회는 부목사 1명이 확진됐을 뿐, 밀접접촉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정을 통해 피신청인은 “M교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실 없어”란 제목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뉴스화면으로 내보내고 홈페이지와 더불어 유튜브 및 페이스북 뉴스 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대신 교회 측은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했다.

〈사례 2〉

F언론사는 2020년 8월 23일 “‘400명’근접··집단감염 전국 속출, 대유행 위기”란 제목으로 ○○○구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되는 등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하며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과 사업장 내부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유사한 사업장명이 잘못 기재돼 발생한 오보였다. 해당 언론사는 신청인의 사업장에 방문해 내부 모습을 촬영해 자료화면으로 활용했지만 신청인 측 관계자를 직접 취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중재부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500만원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양측이 사후 협의를 거쳐 후속보도를 하는 것으로 피해가 구제됐다.

허위보도의 일차적 책임이 국가기관의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것이더라도, 이후 언론사가 당사자에 대한 취재에 나섰다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사례 3〉

G언론사는 2020년 5월 14일 “성소수자 전용 헬스장도 휴업…주변 상인들 ‘불안해’”란 제목으로 서울 ○○구의 한 성소수자 전용 헬스장의 긴급휴업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헬스장 측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사유로 휴업했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오히려 보도로 인해 주변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항의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호소했다. 특히 해당 보도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는 신청인의 헬스장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문제는 성소수자 전용 헬스장이 ○○구에 단 한 군데뿐이란 점이었다.

조정을 통해 ‘신청인의 헬스장이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가 게재됐다. 특히 “(피신청인의) 보도가 성소수자가 위기를 전파하는 집단이라는 전제 위에 선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제8장(성적 소수자 인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공익과 피해의 한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이나 단체를 밝히는 것이 정당하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에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는 질병관리본부장(현재는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이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따라서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상호’ 등을 발표한 경우 언론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적, 사회적 의미가 있고, 그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사례 1〉

H언론사와 I언론사는 2020년 9월 10일 “신촌 ○○병원 ‘집단감염’·· 추석 앞두고 야외까지 비상”이란 제목 등의 보도에서 서울 서대문구의 ○○병원과 관련해 최소 17명, 성남의 ○○섬유 등과 관련해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상호를 명시했다. 이는 방역당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해당 자료에는 상호와 확진자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섬유 측은 "이웃 섬유공장 3곳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유독 신청인의 사업장 이름만 공개돼 사업 환경이 악화됐으며,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면서 언론사 당 15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사업장의 상호는 초상권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을 근거로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사례 2〉

J언론사는 2020년 2월 26일 "대전서 3명 코로나19 확진, 간호사 확진에 ○○병원 코호트 격리" 제목의 기사에서 "A씨는 전날 열이 나자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를 받아 모두 17개 언론사가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러 갔다"며 정정보도 또는 기사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환자들로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 갔다면서 왜 근무했느냐"는 항의를 받았고, 기사에도 부정적 댓글이 달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사전 조정을 통해 J언론사를 포함한 모든 피신청인들이 보도내용 중 '전날 열이 나자'라는 표현을 '무증상 상태로'로 수정하거나, 기사에 대한 열람 및 검색을 차단했다. 받아쓰기 저널리즘에 의해 앞서 보도된 기사의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였다.

정부 감시와 비판

언론이 '제4부'로 불리는 근거는 입법·행정·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적극적인 취재 보도는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실을 오도하거나 무조건적인 비판은 오히려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한다. 언론은 늘 사실의 바탕 위에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몇몇 사실의 편린만으로 전체의 진실을 주장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오보에 가까울 수 있다.

〈사례 1〉

K언론사는 2020년 3월 30일 "美 FDA 한국 진단키트 사전승인? 알고보니 외교부의 '가짜 뉴스'"란 제목으로 외교부가 국내 코로나 진단 키트가 미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가짜 뉴스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 근거는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미 정부로부터 국내 3개 업체의 진단 키트에 대한 FDA 사전승인(긴급사용승인과 별개)을 받았는데, K언론사가 반론 청취도 없이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실제로 외교부의 발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고, 이후 대미 수출까지 차질 없이 진행됐다.

조정을 통해 피신청인은 '바로잡습니다' 형식으로 "국내 3개 업체의 진단키트가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 받았음을 미 정부가 통보해왔으므로 외교부의 발표가 '가짜 뉴스'라는 제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을 두고 취재내용이 진실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보도 당사자의 반론을 청취함으로써 이상이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

〈사례 2〉

L언론사는 2020년 8월 31일 "4명이라더니… 추가로 2명 확진 잇단 확진자에 전전긍긍하는 H경찰서"란 제목으로 경찰서장이 간부회의에서 "우리 경찰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더 나오면 안 되니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최소한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측은 "이미 60% 이상 검사를 완료했으며, 오히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취재원이 있다고 했지만, 그가 경찰서장에게 직접 들은 간부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후를 종합하면 간부회의 내용이 아래로 전달되면서 과장 또는 과잉 해석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정을 통해 피신청인은 경찰서장이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취재원에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제보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간부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한 명이라도 직접 취재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오보였다.

〈사례 3〉

M언론사는 2021년 2월 5일 "'분노한 수용자 문 차고 나와 교도관 도망' 그날 D구치소"란 제목으로 D구치소 측이 확진자를 격리조치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수용자가 수용시설 밖으로 나오자 소속 교도관이 도망쳤다는 내용의 수용자 인터뷰를 보도했다.

당시 해당 구치소는 엄청난 인원의 확진자가 나와 사회 문제로 부상한 상황이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교정당국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비록 수용자가 직접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측의 해명을 듣고 사실관계의 전모를 파악해야 했다. 법언에 "상대편 말도 들어라"는 경구가 있다.

언론사는 조정을 거쳐 "수용자의 이동을 금지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 분류 수용했으며, 수용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구치소 측 입장을 전했다. 특히 교도관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지원인력을 요청하면서 수용동 출입문을 봉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도관 도망'이라는 제목 표현도 삭제했다.

〈사례 4〉

N언론사는 2021년 2월 24일 "서호 통일부 차관,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안 해…政·靑도 뚫릴 뻔"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통일부 간부들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남북문제도 상의할 겸 신년 산행을 한 뒤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후 김 전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서 차관이 자율격리를 했고, 진단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방역지침 위반은 없었다고 했다. 차관이 밀접접촉자가 아니어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고, 오찬도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차관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정정에 응하지 않아 조정불성립으로 끝났다.

현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으나 그만큼 방역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경각심이 필요함을 일깨워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익과 보도

국가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어떠한 보도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 그것이 전 지구적 상황이라면 과연 카메라와 펜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코로나19는 국가 간 격차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방역에 대한 접근 방식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능력에 따라 자국의 수많은 목숨이 달려 있다. 백신 없이 집단면역을 택했던 일부 선진국들은 뒤늦게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으로 전환했다. 효과적인 국경봉쇄로 상대적인 청정지역 대우를 받던 국가들도 뒤늦게 바이러스 확산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청정국이라던 베트남과 대만, 싱가포르도 빨간 불이 켜졌다. 지구촌 시스템에서 '나홀로 청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런 가운데 '백신 패권주의'가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중국이 시노팜 백신을 앞세워 제3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특허의 일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회사는 반대하지만, 자칫 중국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백신 살포로 미국의 대 중국 세계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까 우려한 듯하다.

여하튼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국제관계의 합종연횡을 결정짓는 하나의 주요한 요소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익과 언론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제한적 검사나 제한적 보도는 잠시 국내나 세계 언론의 비판적 주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경우 그런 혐의가 짙다는 보도가 있다. 그렇다고 감염자 수가 통제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속으로 더 곪아 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투명한 방역 체계는 현재로선 모범적으로 보인다. 매일 적지 않은 확진자 수가 발표되지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음모론을 펴는 시민은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정부에 대한 합당한 감시·비판과 정파적 비난이나 오도 사이의 선을 넘나드는 경우는 여전해 보인다. 본디 '선택적' 보도는 자칫 '과잉과 편향' 보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추적과 재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사례〉

O언론사는 2021년 4월 8일 "'백신 더 사면, 더 많은 물량 조기에 공급' 화이자 두달전 제안했는데 정부가 거절"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월에 정부가 화이자 측과 3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추가물량을 계약할 당시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화이자 측 제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백신 패권주의' 상황에서, 또 백신 확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물량을 더 구매하지 않은 건 명백한 실책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신 필요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확보한 백신의 공급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측이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가 그런 제안을 거절한 적도 없다"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 사안은 조정을 거쳐 피신청인이 5월 15일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측으로부터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반론보도를 실음으로써 일단락됐다.

다만 세계적인 백신 제약사들이 지난해부터 각국을 상대로 '선 구매계약'을 요청했는데, 제약사마다 백신의 단가도 크게 차이가 나고, 공급 시기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따라서 우리 언론들이 특정 국가의 특정 백신의 효능만 강조하고, 여타 백신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강조하게 되면 특정 백신의 도입 단가가 높아지고 도입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여타 백신의 효과를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거부감을 줄이면, 한국인이 선호하는 특정 백신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대량으로 들여올 수 있지 않을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아무리 효과가 좋은 백신이라도 판로를 찾기 어려울 테니까 말이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영리기관이지 구호기관이 아니다. 언론들도 '백신 공포증'을 유발하기보다는 '백신 확보전쟁'에서 질병관리청이 유리한 카드를 쥘 수 있도록 '여타 백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이익과 보도이익의 절충점이 아닐까.